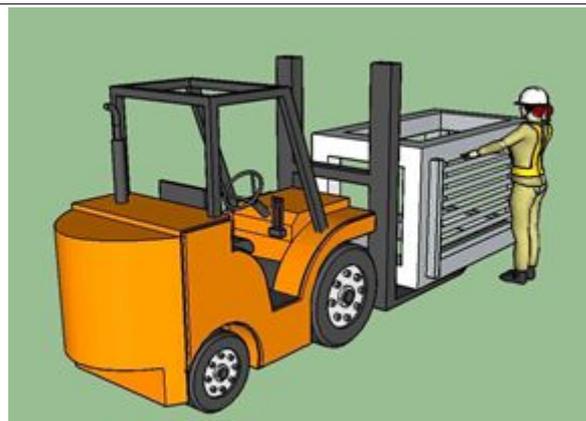


재해자가 작업대상 구조물을 지게차 포크에 올려놓고 예체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 사망한 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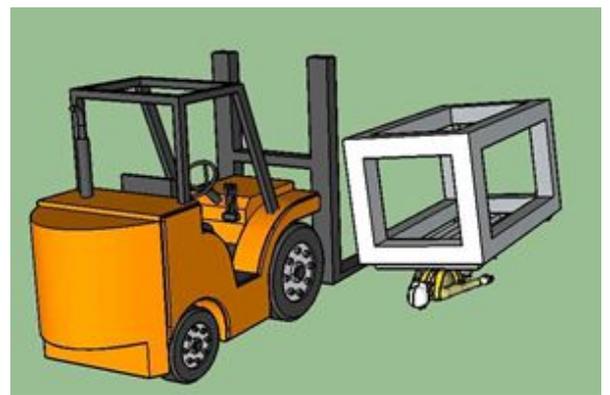
재 해 개 요

- 2017.03.03(금) 13:40부터 15:15분 사이에 충남 아산시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금속 기계구조물 해체를 위해 작업대상 구조물을 지게차 포크에 올려놓고 해체작업을 하던 중, 금속 기계구조물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.

재 해 상 황 도



작업상황(추정)



재해발생상황(최초 발견시)

재해발생 상황도

재 해 발 생 원 인

- 지게차 사용 용도 부적절
 -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, 금속 기계구조물을 올려놓고 작업하는 작업대로 사용함
- 작업방법 부적절
 - 작업대상 금속 구조물이 편하중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넘어짐 방지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

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

- 지게차의 주용도 외 사용 제한
 -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,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.
-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
 - 작업대상 금속구조물 등이 편하중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